

입법정책정보

-제13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I. 상위법령 제·개정	1
1. 교통안전법	1
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4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16
1.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16
2.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	18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20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25

| 상위법령 제 ·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2호, 2024. 1. 23., 일부개정]

□ 제정 · 개정이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고,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 ⑤ (생략)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시행 2019. 12. 27.] [대전광역시조례 제5400호, 2019. 12. 2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통안전개선사업)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업
2. 자전거·운수산업 안전에 관한 사업
3. 도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교통안전협력에 관한 사업
5.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6. 하상도로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시범사업) ① 시장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안전시설물이나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 신기술 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기업에 한한다.

제6조(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통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5호, 2024. 1. 23.,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6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략)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8. 11.] [대전광역시조례 제6077호, 2023. 8. 11., 일부개정]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를 도모하여,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정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 수종별로 도시숲등의 생육상태, 병충해의 감염 여부, 토양 상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11월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② 병해충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검 결과 수목 및 관리시설물등이 인위적인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1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및 관련 계획과 설계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계획, 가로수 심는 공간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안전시설물이나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위치, 종류 및 규격이 적절한지 여부와 통신, 전기시설의 지하 매설에 관한 사항
3. 가로수 보호를 위한 관리시설물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옮겨심기, 바뀌심기를 하려는 경우 가로수가 통일적으로 조성·유지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심는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1. 도로에 접한 보도에 가로수를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藥害)와 이동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도,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나무줄기의 중심까지 거리를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일 경우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도록 심어야 한다.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분리대 등에도 심을 수 있다.

제25조(심는 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개정 2023.8.11>

1. 키큰나무

- 가. 심는 거리는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수목 종류의 수관폭,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심는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 나. 심는 유형은 도로선형(道路線形)과 평행하도록 열식(列植: 직사각형으로 심어진 나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 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집 심기 또는 혼성 심기를 할 수 있다.
- 다. 도로의 한 쪽을 기준으로 일렬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이열 이상 심을 수 있다.
-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종류로 심어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 확장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로 심을 수 있다.

2. 키작은나무

- 가. 심는 간격은 수목 종류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 장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심어야 한다.
- 나. 심는 유형은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군집 심기를 하고, 같은 심는 공간일 경우에는 같은 종류로 심어야 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종류로 혼식(混植)할 수 있다.

다. 심는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큰나무, 키작은나무, 초본식물을 여러 층 구조로 심을 수 있다.

라.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가로수를 심는 것이 어려운 지역일 경우에는 저수(貯水) 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제26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나무모양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나무모양, 신호등 및 도로표지 등과의 시야 및 통행공간의 확보, 주변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7조(관리시설물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새롭게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관리시설물등과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동절기에 도로의 제설을 위하여 사용된 제설제 등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관리시설물등에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1호, 2024. 1. 9.,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에 민간배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되, 민간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조치 요청 시 해당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배출시설의 경우 가동률 조정·가동시간 변경 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사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⑤ 시·도지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15.] [대전광역시조례 제5832호, 2022. 4.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를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교체한 자동차

2.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③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시 관할 구역 내 전 지역으로 한다.

④ 자동차의 운행 제한시기는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을 제외한 날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⑤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발령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3조의2(계절관리기간 자동차 운행 제한)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의3(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영상 녹화기기 등 단속 장비를 휴대하고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 공무원은 모자를 착용하거나 표지 등을 부착하여 누구나 쉽게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속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운영하여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다중운집인파사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며,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의 의무화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보고 의무를 신설함.

○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인 재난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인명·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의 범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생략)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도위원회에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위원회에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도위원회”로 본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정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
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

[시행 2022. 9. 30.] [대전광역시조례 제5886호, 2022. 9.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방송협의회)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홍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9.30.>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협의회는 해당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전,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요청된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상급 기관인 시·도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및 학교장을 조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와 안전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 ⑥ (생략)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⑮ (생략)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시행 2015. 2. 17.] [대전광역시조례 제4412호, 2015. 2. 1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학교폭력 예방 사업)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 조사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상담·치료 등 지원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선도 등 지원
4. 학교폭력 예방 홍보·교육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제6조(자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3.] [부산광역시조례 제7174호, 2024. 1. 3., 제정]

□ 제정이유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거나,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

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된 경우
3.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

[시행 2024. 1.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29호, 2024. 1. 4., 제정]

□ 제정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성별·세대별·계층별 균형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성별·세대별·계층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고, 정책효과가 균형 있게 도민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도민의 의사를 지역별·성별·세대별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화롭게 고려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및 산업별·직업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별·성별·세대별 균형 있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인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의 섬 지역 및 산남·산북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에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2. 사무의 성질상 지역별·성별·세대별 도민 의사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

제5조(현황공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알권리, 상향식 도민역사의 정책 반영 및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요 위원회 위원의 지역별·성별·세대별 구성 현황
2. 제주자치도 행정예민간의 참여가 필요하여 공모를 시행한 경우 모집 구성원의 지역별·성별·세대별 구성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3-0343 /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 의뢰안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20. 4. 1. 의견제시 20-0053 참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권한 행사를 견제·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법제처 2020. 4. 1. 의견제시 20-0053 참조)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으로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과 자연보호활동(제4호사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하 “인천광역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무상교통정책”이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여 도로 위의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무상교통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무상교통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제1호),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2호), 무상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제3호) 등의 내용이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인천광역시조례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 위의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비록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은 무상교통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들을 반드시 예산안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조에 따라 지원계획에 반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원방식, 지급액, 지원절차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무상교통정책의 내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또는 무상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예산 지원 등의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무상교통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이고, 조례로서 무상교통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항목과 규모를 사전에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인천광역시조례안은 예산편성에 있어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재량이 박탈될 정도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조례안의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청구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3-0451 /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의뢰안건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 주요내용

[질의요지]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바,

가.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나. 위 질의 가의 “일정 기간” 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창원시조례” 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질의 가), 그 “일정 기간” 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질의 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 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원시조례 제9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번만 더 위원으로 연속하여 위촉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위원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이상 위원직위에 연속하여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인 것이고, 최초 2년의 임기 이후 한 번 더 연속적으로 위촉되어 그 임기를 마친 위원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에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 그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위원이었던 자가 다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허용되는 “일정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창원시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창원시조례 제9조제1항에서 연임 제한의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의 임기(2년)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관련 규정에서 연임을 제한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위원의 임기(2년) 및 재임기간, 사임 후 후임자가 취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할 것이고, 특정한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창원시조례 제9조제1항의 취지와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귀 시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 개정

□ 주요내용

2024년 1월 2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자정보거래법」 제2차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논란이 되어 온 기존 조항을 개정하고 7개의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정의와 법적 확실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전자정보거래법」 제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인증기관의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제13조, 제13A조)

개정법 제13조에서는 외국 전자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13A조를 도입하여 전자인증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전자서명 △전자인감 △전자타임스탬프 △등기전자배달서비스 △웹사이트 인증 △전자서명 그리고/또는 전자인감 보존 △디지털신원확인 △기타 전자인증서 활용과 관련된 서비스로 확대하였다.

2. 아동보호 조치(제16A조 및 제16B조)

개정법 제16A조는 전자시스템운영자에게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속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전자시스템운영자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 요건에 대한 정보 제공 △아동 이용자 인증 체계 구축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또는 기능의 악용 신고 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면경고부터 접근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3. 고위험 전자거래 시 전자서명 사용(제17조)

제17조제2a항을 신설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등의 고위험 전자거래에서 전자인증서로 보호되는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4. 국제전자계약에서의 인도네시아 법률 적용(제18A조)

제18A조를 신설하여 국제전자계약에서 △당사자인 전자시스템운영자가 인도네시아 출신이고 △계약이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이 인도네시아에 있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규제됨을 명시하였다.

5. 온라인상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의 금지(제27조, 제27A조, 제28조, 제28A조)

개정법은 제27조의 4개의 항을 2개로 줄이고 제27A조와 제27B조를 신설하여 명예훼손과 전자적 위협을 각각 규정하였다. 제27A조는 타인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하는 전자정보와 문서의 공개와 유포 금지하고 있으며, 제27B조는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자정보와 문서를 배포/전송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 가짜뉴스 유포 금지(제28조, 제45A조)

개정법 제28조제3항에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사실의 전자정보나 문서의 고의적 배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도입하였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제45A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전자시스템운영자에 대한 정부 제재 기능 추가(제40A조, 제43조)

제40A조를 신설하여 정부가 공정하고 책임감 있으며 안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장려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전자시스템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능을 제한 또는 추가하거나 인도네시아 관할권 내에서 전자시스템의 기능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조정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계정 폐지 등 공무원 수사관에게 관련 권한을 확대 부여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개정의 후속조치로 2024년 10월까지 기존의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9년 제71호」, 「민간전자시스템운영자에 관한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의 개정과 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부령의 제정 등 4개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

* 2008년 제정, 2016년 제1차 개정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 개정”, 공공누리 제1유형, 2024 1. 22.